

판매업 []등록 []변경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4일
신청인	법인명(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	
	대표자 성명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	
구분	판매업 [] 소포장농약 판매업 []			
등록 신청내역 (등록 신청하는 경우)	판매관리인 성명		생년월일	
	보관창고의 소재지			
변경등록 신청 내역 (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)	구분	변경 전		변경 후

본인의 이메일,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[]에 []아니오

「농약관리법」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·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 신청 시	1.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(법인만 해당합니다) 2. 시설의 명세서 1부 3. 건물(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)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건물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: 건물등기사항증명서	수수료: 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름
	변경등록 신청 시	1. 등록증 1부 2.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	

처리절차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 특별자치시·도 시·군·구	→	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특별자치시·도 시·군·구	→	등록증 발급(재발급)